송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의견청취(안)

의안 번호	1464

제출연월일: 2020. 6. .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)에 의거 송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을 마련하였고,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진행하였으며,

송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에 대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0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사업개요

가. 위 치: 성동구 송정12가길 11일대
나. 면 적: 295,000㎡
다. 사업기간: 2019 ~ 2023년(5년)
라. 추진방향: '길'을 따라 '행복'이 넘치는 송정 #휴식, #힐링, #골목길, #뚝방, #행복
마. 사업내용: 누구나 걷고 싶은 뚝방, 머무르고 싶은 송정길, 행복 가득한 송정 마을을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
바. 소요예산: 100억 원(시비 90, 구비 10)

3. 추진경위

○ 2018. 09.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

○ 2019. 01. 총괄코디네이터 위촉(서울시)

○ 2019. 04. 송정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및 공동체 지원 용역 착수, 송정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

○ 2019. 06. 송정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모집 및 구성, 도시재생대학(48명) 및 주민공모사업(6개) 추진

○ 2019. 07. 주민역량강화 배움품앗이 등 프로그램(10개 강좌, 232명) 운영

○ 2019. 08. 주민설문조사(1,238부) 및 주민 워크숍(18회, 424명), 찾아가는 설명회(19회), 주민협의체 설명회 개최(11회, 68명), 소식지 발간(4회) 등

○ 2019. 10. 도시재생특강, 선진지 사례탐방(4회, 64명) 등

○ 2019. 11. 도시재생축제 개최(1,200여명)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

○ 2019. 12. 송정도시재생 성과공유회 개최(80여명)

○ 2020. 01. 2020년 상반기 주민공모사업 추진(10개)

○ 2020. 03. 송정도시재생활성화 공동체 지원 용역 시행

○ 2020. 05. 주민협의체 주민총회 및 송정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주민공청회, 송정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개최

4. 송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주요 내용

가. 비전 및 목표

○ 지역자원인 송정제방길과 골목길을 따라 모든 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을 도시재생 목표로 함

나. 사업 총괄표

목표		사업명	세부사업명	사업내용	사업비 (백만원)
마중물사업	누구나 걷고싶은 뚝방	A 제방 활용한 공간 확충 사업	A-1.세대공감 플랫폼 조성	• 마을카페, 마을 미디어 센터 등 주민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	700
			A-2.자연친화 어린이 놀이터 조성	• 제방 기존 수목과 어우러지는 어린이 놀이터 조성	400
		B 제방 이용 활성화 위한 편의시설 조성사업	B-1.주민 소모임 쉼터 조성	• 지역내외 주민 이용 가능한 휴식공간 조성	250
			B-2.보행약자 위한 경사형 진입로	• 자전거, 보행약자(유모차, 휠체어 등) 등 이용 편의 증진	100
	머무르고 싶은 송정길	C 송정길 특화사업	C-1.광나루로11길 활성화	• 생활가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개선 및 상인 지원	900
			C-2.테마 골목길 조성	• 주요 골목길 정비를 통한 외부 인구 유입 유도 및 상권활성화	1,950
			C-3.유휴공간 활용한 정원조성	• 골목화분, 골목벽화, 담장, 공공시설 등 활용한 녹지 조성	500
	행복 가득한 송정마을	D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	D-1.앵커시설 건립 및 운영	• 지역경제 활성화,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위한 주민활동 기반	2,400
			D-2.송정 문화플랫폼 건립 및 운영	• 송정부엌, 송정거실 등 지역주민 공유하는 작은 문화공간 조성	300
		E 주민자립 지원	E-1.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지원	• 주민역량강화(주민공모사업, 도시재생대학, 등), 공동체 활성화 용역,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	2,500
	합 계				10,000
연계사업	누구나 걷고싶은 뚝방	B 제방 이용 활성화 위한 편의시설 조성사업	b-1. 경관조명 설치	• 심야 제방 안전확보 및 미관개선	100
			b-2. 산책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	• 제방 시설 정비	750
	머무르고 싶은 송정길	C 송정길 특화사업	c-1.동일로 간판개선사업 (완료)	• 노후간판 정비	250
			c-2.동일로 신호과속 CCTV 설치	• 송원초교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	55
			c-3.광나루로11길 경관개선사업	• 상가 입면/도로정비 가로미관개선	1,000
			c-4.광나루로11길 간판개선사업	• 상가 간판 정비로 가로미관개선	150
			c-5.광나루로11길 지중화 사업	• 전신주 지중화 및 보행환경개선	5,100
			c-6.광나루로11길 상생협약 (완료)	• 둥지내몰림 방지	-
			c-7.송정10길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	• 골목길 정비 통한 가로미관개선	900
			c-8.송정12라길·마길 골목길 재생사업	• 골목길 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	1,100
			c-9.태양광 에너지 보급사업	• 신재생에너지 보급	418
			c-10.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	•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	100
			c-11.쓰레기 상습무단투기지역 관리	• 쓰레기 투기 단속 및 계도	-
			c-12.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사업	• 골목길 악취개선	300
			c-13.노후하수관 교체사업(군자2구역)	• 노후하수관 및 빗물받이 교체	1,000
			c-14.소규모 주차장 조성 (완료)	• 소규모 주차장 설치	2,600
			c-15.서울가꿈주택 사업	•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	(미정)
	행복 가득한 송정마을	D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	d-1.마을기업 사업비 및 사회적기업 지원	• 마을관리기업 지원(고시이후)	(미정)
			d-2.송정동 공공복합청사	• 도서관, 보건소 등 편의시설 복합	22,096
		E 주민자립 지원	e-1.민간공동주택 활성화 사업	• 아파트내 공동체 활성화	100
			e-2. KT 소셜메이커스틈새돌봄(완료)	• 아동돌봄 및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	30
	합 계				36,049

다. 사업 총괄 계획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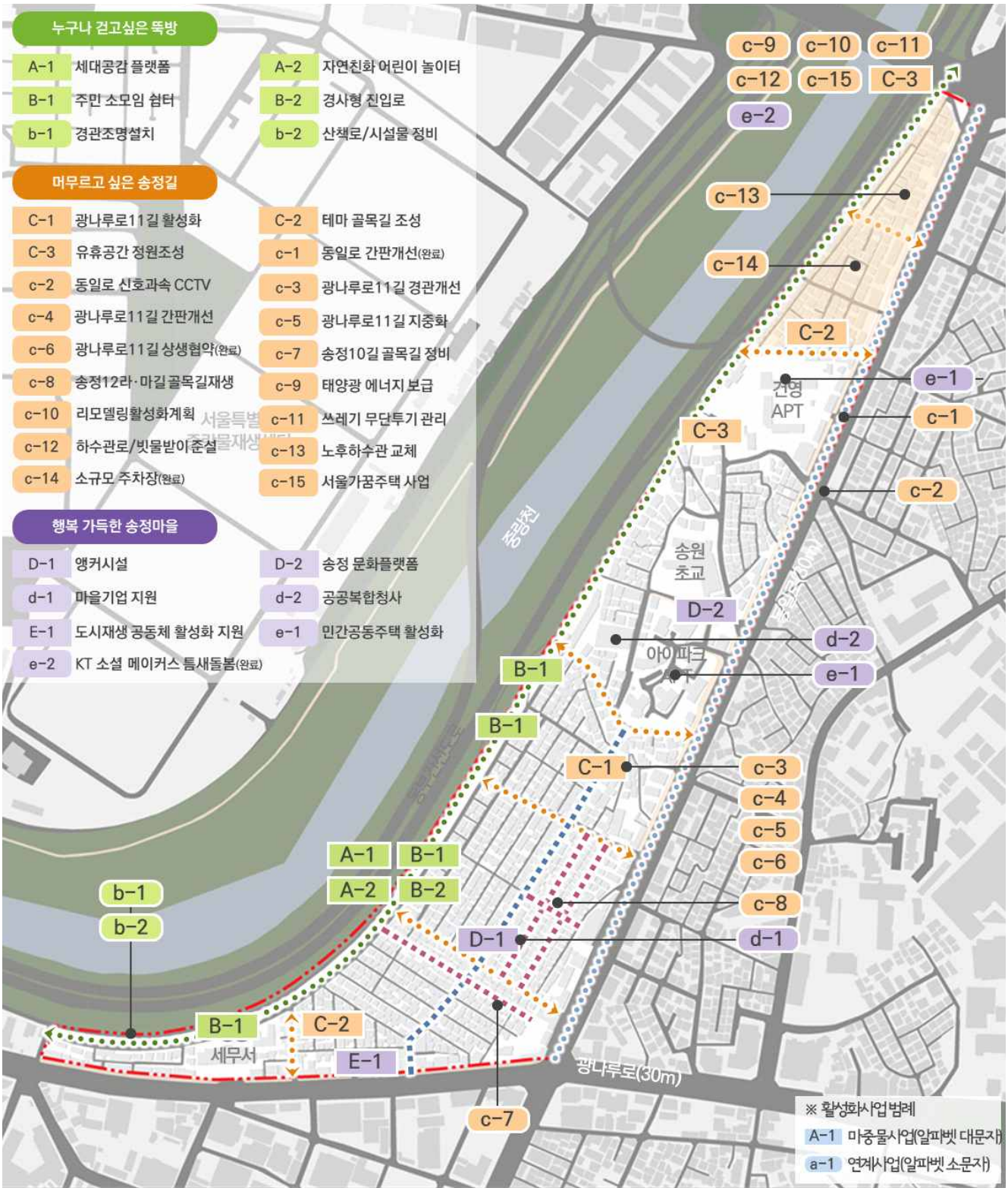
누구나 걷고싶은 뚝방
A-1 세대공감 플랫폼
A-2 자연친화 어린이 놀이터
B-1 주민 소모임 쉼터
B-2 경사형 진입로
b-1 경관조명설치
b-2 산책로/시설물 정비
머무르고 싶은 송정길
C-1 광나루로11길 활성화
C-2 테마 골목길 조성
C-3 유휴공간 정원조성
c-1 동일로 간판개선(완료)
c-2 동일로 신호과속 CCTV
c-3 광나루로11길 경관개선
c-4 광나루로11길 간판개선
c-5 광나루로11길 지중화
c-6 광나루로11길 상생협약(완료)
c-7 송정10길 골목길 정비
c-8 송정12라·마길 골목길재생
c-9 태양광 에너지 보급
c-10 리모델링활성화계획
c-11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
c-12 하수관로/빗물받이준설
c-13 노후하수관 교체
c-14 소규모 주차장(완료)
c-15 서울가꿈주택 사업
행복 가득한 송정마을
D-1 앵커시설
D-2 송정 문화플랫폼
d-1 마을기업 지원
d-2 공공복합청사
E-1 도시재생 공동체 활성화 지원
e-1 민간공동주택 활성화
e-2 KT 소셜 메이커스 특새돌봄(완료)
중랑천
광나루로(30m)
세무서
송원초교
아이파크
※ 활성화사업 범례
A-1 마중물사업(알파벳 대문자)
a-1 연계사업(알파벳 소문자)

5. 향후 추진일정

○ 2020. 07.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

○ 2020. 08.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승인 신청(구 → 시)

6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19조 및 제20조

나.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·승인 절차도

사전조사 및 의견수렴(구청장)

1차 (현장구축 후 4개월 이내)	전문가자문회의 ※활성화계획 기본구상(안) 전문가 자문
	⇩의견제시
	모니터링(광역센터) ※활성화계획 기본구상(안) 검토

⬇

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작성(구청장)

2차 (공청회 2개월 전)	전문가자문회의 ※활성화계획(안) 전문가 자문
	⇩의견제시
	모니터링(광역센터) ※활성화계획(안) 검토

⬇

공청회
(일간신문에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)

⬇

구의회 의견수렴(구청장)

⬇

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(구청장)

⬇

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 승인신청
(구청장 → 서울특별시장)

⬇

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
(서울특별시장 → 내부 부서·관계기관 등)

⬇

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
(서울특별시장)

⬇

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
(서울특별시장)

⬇

관계서류 송부
(서울특별시장 → 구청장)

⬇

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·열람
(구청장)

⬇

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실행(구청장)

전문가 자문회의 및 모니터링
(서울특별시장 /1년 단위)

다. 주민 의견 수렴 과정

○ 주민설문조사: 1,238부(1차: ‘19. 6. 17. ~ 6. 28., 2차: ‘19. 11. 18. ~ 11. 29.)

○ 주민 워크숍: 18회, 424명(‘19. 9. 8. ~ 12. 20.)

○ 찾아가는 설명회: 11회, 68명

○ 주민협의체 임원회의: 5회

○ 주민협의체 창립총회: ‘19. 5. 23.

○ 주민공청회: ‘19. 5. 23.

라. 사업대상지 위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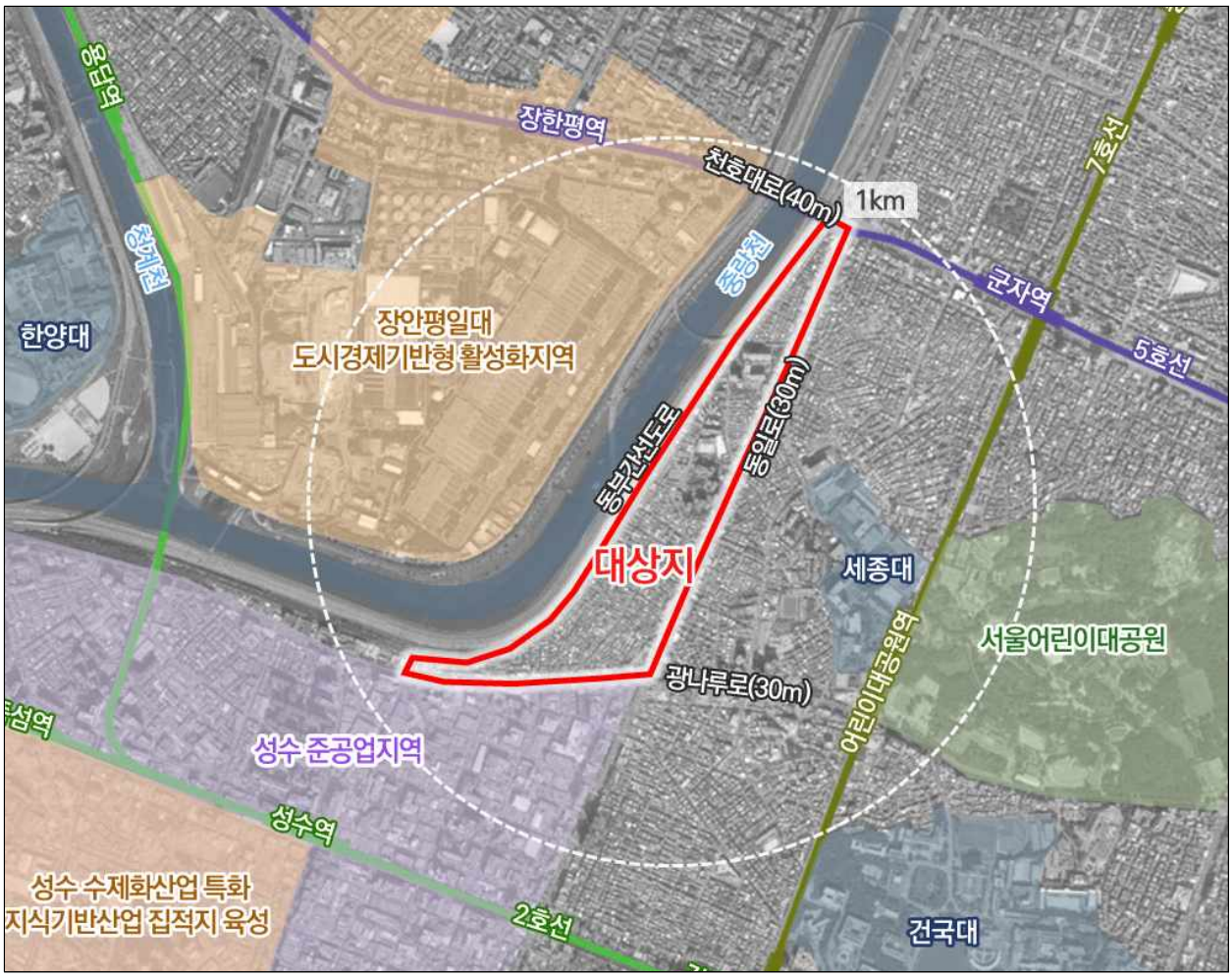

첨부 1. 관계법규 1부. 끝.

[관 계 법 규]

□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

제20조(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)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, 제2항의 경우에는 **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**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공청회를 개최**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**지방의회의 의견**을 들어야 한다.